

2023 보육사업안내 개정 검토

1. 2023 보육사업안내

* 쪽_2023 보육사업안내(3.1자 시행 한글파일 기준-복지부 누리집 확인) 해당 쪽수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I. 어린이집의 설치																													
8	3. 직장어린이집 마. 위탁보육 세부사항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과 유치원 이용, 가정 내 양육 등 다른 양육수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위탁률 30%를 의무 이행으로 간주 *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과 유치원 이용, 가정 내 양육 등 다른 양육수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위탁률 30%를 의무 이행으로 간주 *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어린이집 만0세~만5세반에 해당하는 연령의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실제 이용 영유아 연령 반영 * 정부 보육료 지원 기준과 표현 통일 																									
13	3. 직장어린이집	<p>【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부동산관련 세제지원</td> <td>「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취득세,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신설</td> <td>「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td> </tr> <tr> <td>개별소비세 면제</td> <td>「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td> <td>「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td> </tr> <tr> <td>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td> <td>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td> <td>「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비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취득세,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p>【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부동산관련 세제지원</td> <td>「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직접 사용에 한함),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취득세(직접 사용에 한함),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td> <td>「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td> </tr> <tr> <td>개별소비세 면제</td> <td>「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td> <td>「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td> </tr> <tr> <td>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td> <td>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td> <td>「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비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직접 사용에 한함),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취득세(직접 사용에 한함),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23.3.14. 공포, ‘23.3.14. 시행) 반영 [제19조제1항] 	
구분	지원 내용	비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취득세,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구분	지원 내용	비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직접 사용에 한함),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취득세(직접 사용에 한함),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Ⅱ. 어린이집의 운영					
69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p>「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u>맞별이</u> 자격 인정 - <u>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u>의 경우 <u>맞별이</u>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p>(생략)</p>	<p>「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u>맞별이</u> 자격 인정 - <u>휴직자*</u>의 경우 <u>맞별이</u> 자격 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자의 <u>맞별이</u> 가구 인정 기간 명확화 	
93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p>○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p> <p>*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p> <p>-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u>개인용 소모품</u>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p>	<p>○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p> <p>*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p> <p>-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 <u>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되거나 선호 물품이 있는 개인용 소모품</u>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소모품 수납 가능 범위 명확화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IV. 보육교직원 관리					
181	2. 보육교직원 임면 (채용, 해임 등)	<p>나. 보육교직원 채용</p> <p>3) 채용 시 구비서류</p> <p>가) 공통서류</p> <p>○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p> <p>※ (내용 생략)</p> <p>※ (내용 생략)</p> <p>※ (내용 생략)</p> <p>※ <신 설></p>	<p>나. 보육교직원 채용</p> <p>3) 채용 시 구비서류</p> <p>가) 공통서류</p> <p>○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p> <p>※ (내용 생략)</p> <p>※ (내용 생략)</p> <p>※ (내용 생략)</p> <p>※ <신 설></p> <p>※ 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대체 불가</p>	<p>▪ 채용 시 구비서류 명확화</p>	
198	7. 보육교직원 호봉인상기준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p>5) 호봉의 재획정</p> <p>○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p> <p>-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p> <p>○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p> <p>○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p>	<p>5) 호봉의 재획정</p> <p>○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p> <p>-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 초임호봉의 획정일 이후 법령 및 지침 등 제도변경으로 발생한 호봉인정 근무경력</p> <p>-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p> <p>○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p> <p>○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p>	<p>▪ 선택적 경력 제시로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추가로 경력을 제시하여 호봉재획정 요구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사자 간의 갈등 발생</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212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	<p><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지자체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8239호, 2021. 12. 30., 제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630호, 2022. 3. 31., 제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6900호, 2022.11.9., 제정] ● <신 설>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39호, 2022. 3. 21., 제정] ● <신 설> ●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13호, 2022. 12. 26., 제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7412호, 2022. 4. 21., 일부개정] ●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02호, 2022. 11. 30., 제정] ● <신 설> ●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5021호, 2021. 11. 3., 제정] ●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제4736호, 2022. 4. 8., 제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p><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지자체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8239호, 2021. 12. 30., 제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630호, 2022. 3. 31., 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582호, 2023. 4. 5., 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제1751호, 2023. 4. 27., 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591호, 2023. 5. 4., 제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51호, 2023. 4. 3., 제정] ●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6900호, 2022.11.9., 제정] ●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968호, 2023. 3. 9., 제정]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39호, 2022. 3. 21., 제정] ●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13호, 2022. 12. 26., 제정] ●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제1409호, 2023. 3. 30., 제정] ●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제6007호, 2022. 12. 14., 제정] ●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제1622호, 2023. 2. 2., 제정]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제6025호, 2023. 4. 21., 일부개정] ●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7412호, 2022. 4. 21., 일부개정] ●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02호, 2022. 11. 30., 일부개정] ●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59호, 2023. 5. 8., 제정] ●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제4736호, 2022. 4. 8., 제정] ●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5021호, 2021. 11. 3., 제정] ● 경상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412호, 2023. 3. 24., 제정] ● 가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981호, 2023. 1. 6.,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3427호, 2023. 6. 7.,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제정 조례 추가 	

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225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p>나. 보수교육 구분</p> <p>2) 보수교육 대상자</p> <p>가) 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 등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p>나. 보수교육 구분</p> <p>2) 보수교육 대상자</p> <p>가) 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직무교육 교차이수제 예외 사항 명확화 	
-----	------------------------	---	---	--	--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239	2.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 절차	<p>가. 보수교육 실시 주체</p> <p>○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 희망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p> <p>※ <신 설></p>	<p>가. 보수교육 실시 주체</p> <p>○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 희망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p> <p>※ 단,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에 한하여 해당 시도에 교육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가능</p>	<p>▪ 2급 승급교육 수요자 감소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2급 승급교육을 미개설함에 따라 해당교육에 한하여 지역 제한 완화</p>	
246	5.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p>가. 실시내용</p> <p>○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p> <p>-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p> <p>※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 등 집합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p> <p>*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p>	<p>가. 실시내용</p> <p>○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p> <p>-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p> <p>※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p> <p>*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p>	<p>▪ 특별직무교육 교차이수제 예외 사항 명확화</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VI.어린이집 평가					
261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p>	<p>■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등급 조정 및 결정</div> <div style="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결과통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개별 통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5px; margin-right: 5px;">소명심사 위원회 소명심사</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결과공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보건복지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 width: 40px;">평가 후 관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어린이집 - (A·B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C·D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5px; margin-right: 5px;">한국보육진흥원/육아 종합지원센터 -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 *C· D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5px;">보건복지 부 - 최하위 등급 조 정</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평가결과 사전통지 및 최종통보</div> <div style="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결과공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보건복지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5px; margin-right: 5px;">소명심사</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 width: 40px;">평가 후 관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어린이집 - (A·B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C·D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5px; margin-right: 5px;">한국보육진흥원/육아중 합지원센터 -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 *C·D 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5px;">보건복지 부 - 최하위 등급 조 정</div> </div> </div>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262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방법: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시·도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1차)하며, 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p>----- (중략) -----</p>	<p>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방법: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시·도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1차)하며, 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문서 통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p>----- (중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 																																					
263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 평가대상 통보 업무흐름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업무주체</th> <th style="width: 15%;">주요 업무</th> <th style="width: 6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보육진흥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집</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 확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보육진흥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 지자체) </td> </tr> </tbody> </table>	업무주체	주요 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어린이집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 지자체) 	<p style="text-align: center;">■ 평가대상 통보 업무흐름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업무주체</th> <th style="width: 15%;">주요 업무</th> <th style="width: 6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보육진흥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집</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 확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문서 통지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보육진흥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 지자체) </td> </tr> </tbody> </table>	업무주체	주요 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어린이집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문서 통지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 	
업무주체	주요 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어린이집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 지자체) 																																							
업무주체	주요 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어린이집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문서 통지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 지자체)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267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가. 현장평가</p> <p>○ 현장평가자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현장평가 실시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주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u>사전 고지 없이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u> 	<p>가. 현장평가</p> <p>○ 현장평가자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현장평가 실시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주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u>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단, 평가운영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 주간일지는 변동될 수 있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 	
268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평가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 ※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u>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u> 	<p>○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평가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 ※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u>보육교사 상호작용 등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 	
270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가. 종합평가</p> <p>○ 종합평가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 <u>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음</u> 	<p>가. 종합평가</p> <p>○ 종합평가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 종합평가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는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소위원회에서는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 	<p>○ 종합평가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삭제> -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평가자료*를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 <p>*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p style="text-align: center;">■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div>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p>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p> <p>⑤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⑥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p> <p>⑦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p> <p>⑧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p> <p>※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평가결과 사전통지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p> <p>- 자체점검보고서 허위 작성 등 기타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 확정</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u>종합평가 절차</u></p> <p style="text-align: center;">■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521 352 1028 1326"> <thead> <tr> <th data-bbox="521 352 611 395">구분</th> <th data-bbox="611 352 1028 39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21 395 611 1326">(1단계) 소위원회</td> <td data-bbox="611 395 1028 1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 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조정 가능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div> </td> </tr> <tr> <td data-bbox="521 1326 611 1396">(2단계)</td> <td data-bbox="611 1326 1028 1396">○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1단계)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 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조정 가능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div>	(2단계)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 <삭제>		
구분	내용										
(1단계)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 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조정 가능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div>										
(2단계)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구분	내용			
		종합평가위원 회	<p>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p> <p>○ 기타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p> <p>※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p>			
271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p>○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p> <p>- 범위반 및 행정처분: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p> <p>- 인가변동사항: 과정중단 및 <u>평가주기 조정</u></p> <p>○ 기본사항 확인 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과정중단 없이 진행</p> <p>○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없이 진행</p> <p>○ <신설></p> <p>○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 및 <u>평가과정도 중단</u></p>	<p>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p> <p>○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p> <p>- 범위반 및 행정처분: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p> <p>- 인가변동사항: 과정중단 및 <u>인가변동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를 진행</u></p> <p>○ 기본사항 확인 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과정중단 없이 진행</p> <p>○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없이 진행</p> <p>○ 휴지로 과정중단된 어린이집은 <u>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u></p> <p>○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u>종료처리됨</u></p>	<p>▪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 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p>	<p>※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변경 시, 평가과정 중단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통보 진행(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시 과정 중단 없이 진행)</p> <p>※ 평가 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시 평가과정은 중단될 수 있음(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시 과정 중단 없이 진행).</p>		
272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 변동사항 관련 업무</p> <p>-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는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 발생 사실 확인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p> <p>-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u>선정통보일로부터 결과통보 전까지</u>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p>	<p>○ 변동사항 관련 업무</p> <p>-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는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 발생 사실 확인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p> <p>-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u>선정통보일 이후</u>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p>	<p>▪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p>	
272-273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다. 등급결정 및 평가주기</p> <p>○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p> <p>※ 다만, 범위만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p> <p>- <u>결과발표 이후, 평가과정 중</u> 발생한 범위만 및 행정처분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p>	<p>다. 등급결정 및 평가주기</p> <p>○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p> <p>※ 다만, 범위만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p> <p>- <u>평가결과 사전통지 이후, 최종통보 전까지</u> 평가과정 중 발생한 범위만 및 행정처분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p>	<p>▪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273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u>결과공표</u> <u>가. 결과통보</u> ○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u>통보</u> 나. 소명 ○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 - <u>평가결과 통보월의 말일까지</u>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중략) 다. <신설></p>	<p><u>결과발표</u> <u>가. 평가결과 사전통지</u> ○ 어린이집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u>통지</u> 나. 소명 ○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 - <u>평가결과 사전통지월의 말일까지</u>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중략) 다. <u>평가결과 최종통보</u> ○ <u>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1일 전·후에</u>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u>통보</u>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u>평가결과 최종통보</u> ※ <u>평가주기는 평가결과 최종통보일자부터 시작</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 	
274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p><u>다. 결과공표</u>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 (공표 시기) <u>결과통보 후 익월 1일</u></p>	<p><u>라. 결과공표</u>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 (공표 시기) <u>평가결과 최종통보월 5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정(5.25.시행) 반영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Ⅷ. 시간제보육																							
301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p>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p> <p>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539 419 1016 501"> <thead> <tr> <th data-bbox="539 419 607 501">필수 항목</th> <th data-bbox="607 419 875 501">어린이집</th> <th data-bbox="875 419 1016 501">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39 501 607 560">보육실 확보</td> <td colspan="2" data-bbox="607 501 1016 560">○ (공통) 시간제 보육실 <u>13.2㎡</u> 이상(1개반당)</td> </tr> <tr> <td data-bbox="539 560 607 1299">평가 등</td> <td data-bbox="607 560 875 1299"> <p>○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p> <p>- 종략</p> <p>- 종략</p> <p>- 종략</p> <p>* 동 규정은 '19. 6. 12.부터 적용</p> <div data-bbox="629 724 853 129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9. 6. 12.법률 제15892호 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인증 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단, 신규 인가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div> </td> <td data-bbox="875 560 1016 1299"></td> </tr> </tbody> </table>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실 확보	○ (공통) 시간제 보육실 <u>13.2㎡</u> 이상(1개반당)		평가 등	<p>○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p> <p>- 종략</p> <p>- 종략</p> <p>- 종략</p> <p>* 동 규정은 '19. 6. 12.부터 적용</p> <div data-bbox="629 724 853 129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9. 6. 12.법률 제15892호 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인증 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단, 신규 인가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div>		<p>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p> <p>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1068 419 1545 501"> <thead> <tr> <th data-bbox="1068 419 1135 501">필수 항목</th> <th data-bbox="1135 419 1341 501">어린이집</th> <th data-bbox="1341 419 1545 501">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68 501 1135 544">보육실 확보</td> <td colspan="2" data-bbox="1135 501 1545 544">○ (공통) 시간제 보육실 <u>10.6㎡</u> 이상(1개반당)</td> </tr> <tr> <td data-bbox="1068 544 1135 1267">평가 등</td> <td data-bbox="1135 544 1341 1267"> <p>○ 어린이집 평가 결과 B 등급 이상인 어린이집</p> <p>- 종략</p> <p>- 종략</p> <p>- 종략</p> <p>* 동 규정은 '19. 6. 12.부터 적용</p> <div data-bbox="1158 703 1341 126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9. 6. 12.법률 제 15892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 지표 B등급 이상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div> </td> <td data-bbox="1341 544 1545 1267"></td> </tr> </tbody> </table>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실 확보	○ (공통) 시간제 보육실 <u>10.6㎡</u> 이상(1개반당)		평가 등	<p>○ 어린이집 평가 결과 B 등급 이상인 어린이집</p> <p>- 종략</p> <p>- 종략</p> <p>- 종략</p> <p>* 동 규정은 '19. 6. 12.부터 적용</p> <div data-bbox="1158 703 1341 126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9. 6. 12.법률 제 15892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 지표 B등급 이상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사업기획과-1769(2023.4.28.,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독립반) 보육실 면적 기준 변경 안내」) 반영 '19.6.12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구법(인증제)에 관한 내용 삭제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실 확보	○ (공통) 시간제 보육실 <u>13.2㎡</u> 이상(1개반당)																						
평가 등	<p>○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p> <p>- 종략</p> <p>- 종략</p> <p>- 종략</p> <p>* 동 규정은 '19. 6. 12.부터 적용</p> <div data-bbox="629 724 853 129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9. 6. 12.법률 제15892호 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인증 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단, 신규 인가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div>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실 확보	○ (공통) 시간제 보육실 <u>10.6㎡</u> 이상(1개반당)																						
평가 등	<p>○ 어린이집 평가 결과 B 등급 이상인 어린이집</p> <p>- 종략</p> <p>- 종략</p> <p>- 종략</p> <p>* 동 규정은 '19. 6. 12.부터 적용</p> <div data-bbox="1158 703 1341 126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9. 6. 12.법률 제 15892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 지표 B등급 이상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div>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05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p>라. 지원 기준</p> <p>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r> <td>인건비 및 운영비</td> <td> <p>(지원조건)</p> <p>○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p> </td> </tr> </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p>○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p>	<p>라. 지원 기준</p> <p>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r> <td>인건비 및 운영비</td> <td> <p>(지원조건)</p> <p>○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p> <p>※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u>출산·유산·사산휴가</u>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u>을 사용한 경우, <u>대체교직원을 채용한 때에 한하여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u> 계속 지원</p> <p>※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u>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휴직)</u>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u>육아휴직</u>을 사용한 경우, <u>대체교직원을 채용한 때에 한하여 대체교직원의 호봉을 기준으로</u> 지원</p> <p>단, 이 경우 대체교직원의 인건비는 <u>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급되었던 인건비 금액 범위 내에서만</u> 지원</p> </td> </tr> </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p>○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p> <p>※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u>출산·유산·사산휴가</u>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u>을 사용한 경우, <u>대체교직원을 채용한 때에 한하여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u> 계속 지원</p> <p>※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u>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휴직)</u>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u>육아휴직</u>을 사용한 경우, <u>대체교직원을 채용한 때에 한하여 대체교직원의 호봉을 기준으로</u> 지원</p> <p>단, 이 경우 대체교직원의 인건비는 <u>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급되었던 인건비 금액 범위 내에서만</u> 지원</p>	<p>▪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수정</p>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p>○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p>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p>○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p> <p>※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u>출산·유산·사산휴가</u>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u>을 사용한 경우, <u>대체교직원을 채용한 때에 한하여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u> 계속 지원</p> <p>※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u>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휴직)</u>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u>육아휴직</u>을 사용한 경우, <u>대체교직원을 채용한 때에 한하여 대체교직원의 호봉을 기준으로</u> 지원</p> <p>단, 이 경우 대체교직원의 인건비는 <u>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급되었던 인건비 금액 범위 내에서만</u> 지원</p>												
308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p>바. 운영 기준</p> <p>1) 이용 및 지원시간</p> <p>* 지원시간 및 보육료 변동 시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반영 예정</p>	<p>바. 운영 기준</p> <p>1) 이용 및 지원시간</p> <p>* <삭제></p>	<p>▪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수정</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12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p>가. 제공기관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연도내 배정된 물량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제공기관을 지정 <p>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대체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취소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시·도→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공문 제출) * 최초 물량 배정(보건복지부 → 시·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미지정할 경우에도 해당 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 - 반납 물량은 지역별 수요도 및 추가 지정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재배정(보건복지부 → 시·도) * 시·도는 지역별 사전 수요조사 결과와 해당기관 지정 또는 반 증설 필요 사유(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수, 접근성, 대중교통 근접성, 개시 예정일 등)를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제출(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p>가. 제공기관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연도내 배정된 물량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제공기관을 지정 * 최초 물량 배정(보건복지부 → 시·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공기관 지정을 원칙으로 함 <p>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대체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사업 개시 후 발생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물량은 시군구 내 자체 계획 수립 및 심사 등을 통해 신규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신규지정 후에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수정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15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p>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p> <p>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p> <p>○ (대상) 시간제보육 이용자, 관리기관, 제공기관</p> <p>○ (횟수) 1~2회 / 년</p> <p>○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담당자)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 <u>현장방문 컨설팅, 제공기관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수시점검, 지역별 간담회</u> <p>○ (내용) 기본사항, 운영관리, 건강 및 안전관리, 문서관리, 환경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의 교류 등</p>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규기관의 경우, 3개월 이내 방문 원칙(기존기관의 경우 교사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컨설팅) - (지역별간담회) 지역별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한 실적향상 계획 및 지역별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및 평가 - (제공기관) <u>자체점검</u>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자체, 관리기관) <u>현장점검</u>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수시 방문 모니터링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p>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p> <p>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p> <p>○ (대상) 시간제보육 이용자, 관리기관, 제공기관</p> <p>○ (횟수) 1~2회 / 년</p> <p>○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담당자)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 <u>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정기 모니터링, 수시점검, 간담회</u> <p>○ (내용) <u>기본현황</u>, 운영관리, 건강 및 안전관리, 문서관리, 환경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의 교류 등</p>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규기관의 경우, 3개월 이내 방문 원칙(기존기관의 경우 교사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컨설팅) - (지역별간담회) 지역별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한 실적향상 계획 및 지역별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및 평가 - (제공기관) 자체점검 <u>실시</u>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자체, 관리기관) <u>자체점검 결과 확인</u> 및 현장점검 <u>실시</u>, 결과보고서 제출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수시 방문 모니터링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수정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15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p>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p> <p style="text-align: center;">■ 모니터링 진행 내용 및 시기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진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td> <td colspan="2">연중 상시</td> </tr> <tr> <td>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td> <td>2-3월</td> <td>11-1 2월</td> </tr> <tr> <td>자체점검 (제공기관)</td> <td colspan="2">5~6 월</td> </tr> <tr> <td>현장점검 (공무원, 관리기관)</td> <td colspan="2">8~11월</td> </tr> <tr> <td>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td> <td colspan="2">연중 상시</td> </tr> </tbody> </table>	구분	진행시기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연중 상시		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	2-3월	11-1 2월	자체점검 (제공기관)	5~6 월		현장점검 (공무원, 관리기관)	8~11월		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	연중 상시		<p>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p> <p style="text-align: center;">■ 모니터링 진행 내용 및 시기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진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td> <td colspan="2">연중 상시</td> </tr> <tr> <td>지역별 간담회 (시도 담당 공무원)</td> <td></td> <td>하반기</td> </tr> <tr> <td>정기 모니터링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td> <td colspan="2">4-11월</td> </tr> <tr> <td>수시점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td> <td colspan="2">연중 상시</td> </tr> <tr> <td>성과보고회</td> <td></td> <td>하반기</td> </tr> </tbody> </table>	구분	진행시기		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연중 상시		지역별 간담회 (시도 담당 공무원)		하반기	정기 모니터링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4-11월		수시점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연중 상시		성과보고회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수정 	
구분	진행시기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연중 상시																																								
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	2-3월	11-1 2월																																							
자체점검 (제공기관)	5~6 월																																								
현장점검 (공무원, 관리기관)	8~11월																																								
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	연중 상시																																								
구분	진행시기																																								
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연중 상시																																								
지역별 간담회 (시도 담당 공무원)		하반기																																							
정기 모니터링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4-11월																																								
수시점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연중 상시																																								
성과보고회		하반기																																							

IX.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332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라. 신청 구비서류	<p>(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p>	<p>(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검사결과 삭제 - 23년 1월부터 신청 구비서류 중 유전자검사결과가 삭제된 사항 반영 	
-----	--------------------------------	---	--	---	--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34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라. 신청 구비서류	2) 양육수당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	2) 양육수당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검사결과 삭제 - 23년 1월부터 신청 구비서류 중 유전자검사결과가 삭제된 사항 반영 																					
340-341	2 보육료 지원 개요 다. 산정 방식	<p>(출석 인정 특례)</p> <table border="1" data-bbox="526 651 958 1289"> <thead> <tr> <th>구분</th> <th>인정 기간</th> <th>증빙 서류</th> <th>비고</th> <th>포함</th> </tr> </thead> <tbody> <tr> <td>질병·부상</td> <td>결석 시작일~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td> <td>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¹⁾</td> <td></td> <td>1</td> </tr> </tbody> </table> <p>1)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 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p>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포함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¹⁾		1	<table border="1" data-bbox="1055 544 1487 1299"> <thead> <tr> <th>구분</th> <th>인정 기간</th> <th>증빙 서류</th> <th>비고</th> <th>포함</th> </tr> </thead> <tbody> <tr> <td>질병·부상</td> <td>결석 시작일~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td> <td>의사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¹⁾</td> <td></td> <td>1</td> </tr> </tbody> </table> <p>1)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 사명·면허번호, 직인 포함 권고</p>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포함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특례 증빙서류 인정기준 확대 (다빈도 민원, 교육부 유치원 사례 참고) ※ 유치원 질병결석 인정 서류 -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포함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¹⁾		1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포함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¹⁾		1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43	2 보육료 지원 개요 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의 대상	2 지원제의 대상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2 지원제의 대상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유치원 용어 변경 현재 '영어 유치원' 용어 사용이 불법이므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개정 	

X. 보육예산지원

377	1. 일반사항	<p>■ 인건비 지원 원칙</p> <p>○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별 적용 가능(단, 관리철저)</p> <p>*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533 1177 1019 1369"> <thead> <tr> <th>1963년생</th> <th>현행기준</th> <th>개정기준</th> <th>'23년 예외적용</th> </tr> </thead> <tbody> <tr> <td>1.1.~2.28.</td> <td>'23.6.30.</td> <td>'23.2.28.</td> <td>'23.8.31.</td> </tr> <tr> <td>3.1.~6.30.</td> <td>'23.6.30.</td> <td>'23.8.31.</td> <td></td> </tr> <tr> <td>7.1.~8.31.</td> <td>'23.12.31.</td> <td>'23.8.31.</td> <td>'24.2.28.</td> </tr> <tr> <td>9.1.~12.31.</td> <td>'23.12.31.</td> <td>'24.2.28.</td> <td></td> </tr> </tbody> </table>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p>■ 인건비 지원 원칙</p> <p>○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별 적용 가능(단, 관리철저)</p> <p>*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만65세가 되는 원장 포함)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1064 1177 1550 1369"> <thead> <tr> <th>1963년생</th> <th>현행기준</th> <th>개정기준</th> <th>'23년 예외적용</th> </tr> </thead> <tbody> <tr> <td>1.1.~2.28.</td> <td>'23.6.30.</td> <td>'23.2.28.</td> <td>'23.8.31.</td> </tr> <tr> <td>3.1.~6.30.</td> <td>'23.6.30.</td> <td>'23.8.31.</td> <td></td> </tr> <tr> <td>7.1.~8.31.</td> <td>'23.12.31.</td> <td>'23.8.31.</td> <td>'24.2.28.</td> </tr> <tr> <td>9.1.~12.31.</td> <td>'23.12.31.</td> <td>'24.2.28.</td> <td></td> </tr> </tbody> </table>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 명확히 규정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79	1. 일반사항	<p>▮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p> <p>※ 특례 해제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p>	<p>▮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p> <p>삭제</p>	<p>▪ 특례 해제에 따른 인건비 지원 기준 기안대로 문구 삭제</p>	
381	2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나. 보수의 지급	<p>1) 봉급월액(월 지급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p> <p>※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해야 함)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사용</p>	<p>1) 봉급월액(월 지급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p> <p>※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해야 함)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교직원 성과급 지급 포함),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사용</p>	<p>▪ 용어 명확히 규정</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84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p>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p> <p>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 제외 가능</p> <p>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p> <p>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17인 이하 어린이집 중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p> <p>④ 정원 21인 이상, 현원 18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p> <p>(농어촌 등 지역)</p> <p>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 제외 가능</p> <p>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p> <p>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p>	<p>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p> <p>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 제외 가능</p> <p>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p> <p>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17인 이하 어린이집 중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p> <p>④ 정원 21인 이상, 현원 18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p> <p>(농어촌 등 지역)</p> <p>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 제외 가능</p> <p>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p> <p>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 명확히 규정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정원</th> <th>현원</th> <th>지원 조건</th> <th>대중 소도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인 이하</td> <td>17인 이 하</td> <td>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td> <td>○</td> </tr> <tr> <td>18~20인 이하</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21인 이상</td> <td>4인 이하</td> <td>≡</td> <td>×</td> </tr> <tr> <td>5~17인 이하</td> <td>5개반 이상 운영</td> <td>○</td> </tr> <tr> <td>18인 이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정원</th> <th>현원</th> <th>지원 조건</th> <th>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인 이하</td> <td>17인 이하</td> <td>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td> <td>○</td> </tr> <tr> <td>18~20인 이하</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21인 이상</td> <td>4인 이하</td> <td>≡</td> <td>×</td> </tr> <tr> <td>5인 이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17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p>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중 소도시	20인 이하	17인 이 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17인 이하	5개반 이상 운영	○	18인 이상	-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농어촌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인 이상	-	○	<table border="1"> <thead> <tr> <th>정원</th> <th>현원</th> <th>지원 조건</th> <th>대중 소도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인 이하</td> <td>17인 이하</td> <td>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 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td> <td>○</td> </tr> <tr> <td>18~20인 이하</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21인 이상</td> <td>4인 이하</td> <td>≡</td> <td>×</td> </tr> <tr> <td>5~17인 이하</td> <td>5개반 이상 운영</td> <td>○</td> </tr> <tr> <td>18인 이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정원</th> <th>현원</th> <th>지원 조건</th> <th>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인 이하</td> <td>17인 이하</td> <td>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 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td> <td>○</td> </tr> <tr> <td>18~20인 이하</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21인 이상</td> <td>4인 이하</td> <td>≡</td> <td>×</td> </tr> <tr> <td>5인 이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17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p>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중 소도시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 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17인 이하	5개반 이상 운영	○	18인 이상	-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농어촌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 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인 이상	-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중 소도시																																																																																
20인 이하	17인 이 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17인 이하	5개반 이상 운영	○																																																																																
	18인 이상	-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농어촌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인 이상	-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중 소도시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 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17인 이하	5개반 이상 운영	○																																																																																
	18인 이상	-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농어촌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 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인 이상	-	○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85	3. 국공립방안아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p>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p>※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p> <p>※농어촌 지역에서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유아반 혼합반을 운영할 때,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워 반을 분반하게 되는 경우는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 지원</p> <p>(예) 3세반 7명, 4~5세 혼합반 10명 : 두반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5세 혼합반 운영 계획하였으나, 17명으로 1:15 기준을 초과하게 됨 → 3세반과 4~5세 혼합반 각각 운영하고 두 반에 대해 각각 인건비 30% 지원</p>	<p>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p>※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p> <p>※농어촌 지역에서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유아반 혼합반을 운영할 때,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워 반을 분반하게 되는 경우는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 지원</p> <p>(예) 3세반 7명, 4~5세 혼합반 10명 : 두반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5세 혼합반 운영 계획하였으나, 17명으로 1:15 기준을 초과하게 됨 → 3세반과 4~5세 혼합반 각각 운영하고 두 반에 대해 각각 인건비 30%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명확히 규정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 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p> <p>○ 아동수 감소 및 반 구성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3월에 확정된 영아반, 유아반 교사 수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신청 가능</p> <p>* (예) 3월 교사 배정 : 영아반 3개(A,B,C 교사), 유아반 2개(D,E 교사) →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D,E 교사는 B,C 교사와 지원비율 변경 적용 가능</p> <p>○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시군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및 반을 매년 2~3월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반별 지원기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3월~다음해 2월) 지원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지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p> <p>① 행정구역(읍·면·동) 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1개만 있거나,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 2개 이상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너무 넓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소재 어린이집</p> <p>* (예) 도서, 산간벽지, 지역이 분리된 경우(지역 사이에 강이 흐르는 등) 등 이동 상 어려움과 아동 안전(재해 상황 고려),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등하원 거리 등을 고려</p> <p>② 전체 2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p> <p>○ 시간제보육 교사 인건비는 Ⅷ 시간제보육 안내 참조</p>	<p>※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인건비 지급 승인일 기준)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p> <p>○ 아동수 감소 및 반 구성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3월에 확정된 영아반, 유아반 교사 수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신청 가능</p> <p>* (예) 3월 교사 배정 : 영아반 3개(A,B,C 교사), 유아반 2개(D,E 교사) →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D,E 교사는 B,C 교사와 지원비율 변경 적용 가능</p> <p>○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시군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및 반을 매년 2~3월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반별 지원기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3월~다음해 2월) 지원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지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p> <p>① 행정구역(읍·면·동) 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1개만 있거나,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 2개 이상*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너무 넓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소재 어린이집</p> <p>* (예) 도서, 산간벽지, 지역이 분리된 경우(지역 사이에 강이 흐르는 등) 등 이동 상 어려움과 아동 안전(재해 상황 고려),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등하원 거리 등을 고려</p> <p>② 전체 2개반(미충족반 포함) 이상 운영 어린이집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 (해당 연령반은 정원충족률과 관계없이 지원)</p> <p>○ 시간제보육 교사 인건비는 Ⅷ 시간제보육 안내 참조</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392	4.장애아보육지원	<p>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p> <p>2) <u>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u></p> <p>○ 보육교사 등 배치</p> <p>- 기본반, 방과후반 등 모든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연장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p> <p>※ <신 설></p>	<p>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p> <p>2) <u>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u></p> <p>○ 보육교사 등 배치</p> <p>- 기본반, 방과후반 등 모든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연장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p> <p>※ <u>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u></p>	<p>▪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으로 비장애아동보다 돌봄이 더 필요한데, 1:4로 돌볼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 강도가 더 높아 그에 따라 처우개선 필요</p>	
392	4.장애아보육지원	<p>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p> <p>○ 보육교사 등 배치</p> <p>(중략)</p> <p>- 기본반, 방과후반 등 모든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연장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p>	<p>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p> <p>○ 보육교사 등 배치</p> <p>(중략)</p> <p>-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연장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p>	<p>▪ 장애아전문과 통합어린이집 기준 통일</p>	
396	4.장애아보육지원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1) 지정대상</p> <p>○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p> <p>※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시·도지사는 통합보육반 면적 및 반수 등 보육환경 고려하여 승인(23.3.~))</p> <p>※ <신 설></p>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1) 지정대상</p> <p>○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p> <p>※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시·도지사는 통합보육반 면적 및 반수 등 보육환경 고려하여 승인(23.3.~))</p> <p>※ 단, 장애아동 입소대기 등 통합보육의 요구가</p>	<p>▪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기준 완화</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있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선지정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인정</p>		
398	4.장애아보육지원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중략)</p> <p>○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 기본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p>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중략)</p> <p>○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 연장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p>	<p>▪ 장애아전문과 통합어린이집 기준 통일</p>	
399	4.장애아보육지원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8) 통합시설 지정기준</p> <p>○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p> <p>-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p> <p>※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함</p> <p>※ <단서 조항 신설></p>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8) 통합시설 지정기준</p> <p>○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p> <p>-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p> <p>※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함</p> <p>※ 단, 초기 장애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하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후 1년 이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p>	<p>▪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기준 완화</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3.다. 1)의 설비(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를 갖추지 않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가능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3.다. 1)의 설비(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를 갖추지 않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가능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399	4.장애아보육지원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9) 지정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p>- <u><신 설></u></p>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p> <p>9) 지정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u>신규 지정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정 후 1년 이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u> - <u>기존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4개월 동안 장애아 통합반을 3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취소 기준 추가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402	5.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p>라. 인건비 등 지원</p> <p>○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p> <table border="1" data-bbox="524 376 976 1185"> <thead> <tr> <th data-bbox="524 376 586 445">구분</th> <th data-bbox="586 376 757 445">원장</th> <th data-bbox="757 376 976 445">보육교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24 445 586 1185">현원 감소 시 지원 기준</td> <td data-bbox="586 445 757 1185">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td> <td data-bbox="757 445 976 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만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만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td> </tr> </tbody> </table>	구분	원장	보육교사	현원 감소 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만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만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p>라. 인건비 등 지원</p> <p>○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p> <table border="1" data-bbox="1052 376 1505 1185"> <thead> <tr> <th data-bbox="1052 376 1115 445">구분</th> <th data-bbox="1115 376 1285 445">원장</th> <th data-bbox="1285 376 1505 445">보육교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52 445 1115 1185">현원 감소 시 지원 기준</td> <td data-bbox="1115 445 1285 1185">국공립·법인 등 시설과 동일하게 현원이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td> <td data-bbox="1285 445 1505 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만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만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td> </tr> </tbody> </table>	구분	원장	보육교사	현원 감소 시 지원 기준	국공립·법인 등 시설과 동일하게 현원이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만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만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법인 등 지원시설과 기준 동일 	
구분	원장	보육교사															
현원 감소 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만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만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현원 감소 시 지원 기준	국공립·법인 등 시설과 동일하게 현원이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만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만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462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p>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u>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u> <p>※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p> <p>-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p>	<p>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u>대체교사 지원 가능</u> <p>※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p> <p>-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지원대상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 삭제 	
465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p><신 설></p>	<p>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p> <p>가.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와 보조·연장교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비담임교사 지원 <p>나. 지원기간: '23년 4월 ~ '24년 2월</p> <p>다.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보조·연장교사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함 • 비담임교사 담당 역할에 따른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체+보조+연장교사 업무수행시 :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조건 모두 충족 ② 대체+보조교사 업무수행시 :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충족 ③ 대체+연장교사 업무수행시 : 연장교사 지원조건을 충족 • 비담임교사가 "대체교사+보조교사(4시간)+연장교사(4시간)"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며,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해당 인력수만큼 감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비담임교사 1인 지원 시 → 보조교사 1인, 연장교사 1인 감하여 지원(지원기준 인원 대비), 대체교사 비지원 - 다만, 신청자가 적거나, 가용예산이 충분한 경우, 기준을 달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비담임교사 1인 지원 시 → 보조교사 1인 감하여 지원, 대체교사 미지원 • 그밖에 세부기준은 농어촌지역, 취약보육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수립 <p>■ 지원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충족률 높고,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어린이집 • 농어촌 지역 등 대체교사 파견 또는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어린이집 • 선임교사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p>※ 제한대상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44조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최근 2년 이내 보조급 부정사용으로 환수조치(예징)된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 내용 추가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라.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조건: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 경우(예:누리과정 대체교사) 등은 자격조건을 달리 정하여 운영 • 근로시간: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 지원단가: 월 2,216천원(국공립 1호봉 수준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담임교사가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담임교사 대체, 연장보육 전담교사 역할 수행 등) 「보육사업안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기준을 준용함(교사근무환경개선비 예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업무 수행 시간 일 8시간 월 15일 이상 : 월 26만원 일 4시간 월 15일 이상 : 월 13만원 * 비담임교사가 원감 역할(1급자격, 3년이상 경력)까지 수행하는 경우, 월 2,269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어린이집 자부담) • 업무내용: 담임교사 부재시 대체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소 보조-연장교사 업무를 수행 		
465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신 설>	<p>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p> <p>마. 지원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별 선정기준 공고 및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비담임교사를 공개채용한 후 시·군·구에 일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은 채용 확정된 비담임교사와 채용 즉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업무범위에 대해 사전 설명 등을 통해 명확히 합의하여 계약사항에 포함시켜야 함 - 선정 후 1개월 이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순위 어린이집 등 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시·군·구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후 일면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일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신청하고 시·군·구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그 외 지원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절차 및 기준 준용 <p>바.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담임교사 지원 어린이집 선정 시, 보조-연장교사 등을 갈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어린이집에 미리 안내하고,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교사가 기관별 공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의 • 비담임교사 지원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미지원이 원칙이나, ① 비담임교사 부재시, ② 대체교사 수요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 지원 가능 •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p>■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담임교사가 원장이 담임하는 반의 보육업무 전담 •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이 비담임교사로 근무 • 원장 차량 운행 등 개인 비서 역할 수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 내용 추가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470	19.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p>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p>*(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p>	<p>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또한, 장애아를 포함하는 경우 2명 가능 <p>*(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명확화 	

XI. 육아종합지원센터

488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결격사유 -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필요 <p><u><신 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결격사유 -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필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정 2023.4.11.>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필요(2023.10.12.시행) -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관련 지침 개정반영 필요 	
-----	----------------	--	---	--	--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p>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함</p> <p>※이동학대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IV. 보육교직원 관리 2.보육교직원 임면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라. 이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내용 준용</p>		

2. 2023 보육사업안내(부록)

* 쪽_2023 보육사업안내 부록(한글파일 기준) 해당 쪽수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80p	부록2 2023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3)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p>○ (장소) <u>이동 주민등록 주소지</u>의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p> <p>-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p> <p>*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 가능</p> <p>※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p>	<p>○ (장소) <u>읍·면·동</u>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p> <p>-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p> <p>*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 가능</p> <p>※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p>	<p>·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 읍면동에서도 신청 접수 가능하므로 삭제</p>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81p	부록2 2023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4) 신청 구비서류	가) 보육료 ○ <u>(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u>	가) 보육료 ○ <u>(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검사결과 삭제 - 23년 1월부터 신청 구비서류 중 유전자 검사결과가 삭제된 사항 반영 	